

대외무역법 시행령

<목 차>

1.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작 성 자	이름	문인배
	담당부서 (과)	통상협정활용과		직급	서기관
	국장	박근오		연락처	044-203-5761
	과장	김봉석		이메일	rudia@korea.kr

2026. 06. 08.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박근오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2.규제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2조의 5 제12조의 6			
	3.위임법령	대외무역법 제8조의 3제3항, 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6.6.15.~’ 26.7.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교육·컨설팅 등 통상협정 활용지원 사업의 체계적·안정적·효율적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18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16개) 등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업무수행 등의 근거를 법제화할 필요 * '26.4.21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개정·공포('26.1022일 시행)된 바,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추진 중			
	7.규제내용	현재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들의 운영 실태와 업무수행 역량을 반영하여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제도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통상협정 활용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18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16개) 및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법인 ○ 이해관계자 : 중소기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최소한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를 법제화하여 전문성·책임성 확보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보조금 관리 강화, 기업정보 보호 등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의무 부담이 제한적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인력·시설요건만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침해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기존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18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16개)에서 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금번 입법목적이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나 진입제한을 발생하기보다 지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품질 향상,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 및 기업정보 보호 강화 등의 공익적 효과를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5.규제정비 계획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의6 제1항, 제2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5(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직 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부서 또는 상설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관세사, 변호사, 원산지관리사 또는 무역·통상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시설 기준: 상담, 교육 및 통상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의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한한다)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3호에서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로서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출자한 수출지원 전담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

현 행	개 정 안
	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2조의6(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조의3제5항제2호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이 영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5항제3호에서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한 경우 3.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의 영업비밀, 원산지 증빙 자료 등 민감한 통상정보를 지원 목적 외로 무단 유용하거나 유출하여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현 행	개 정 안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 <u>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 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산업통상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운데 메가FTA의 출범, 탄소국경세, 디지털통상 등 신 통상이슈 대두 등으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지는 등 통상환경이 크게 변화 중
 - 중소·중견기업들의 통상협정 활용 역량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로 부각
- 전문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
 - 이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상담·컨설팅·교육·홍보·정보시스템 개발·보급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
- 지난 15여 년간 민관합동기관인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 통상진흥센터,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등이 해당 역할을 해왔으나,
 - 현행법 상 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의 부재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통상협정 활용 정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 관련 지정, 예산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26.4.21일 관련 대외무역법이 개정·공포('26.4.21)되어,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지정 및 취소기준을 명문화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제도화
	내용	- 조직·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한 기관, 기존 통상활용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한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 - 지정요건 미충족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민감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 확보, 통상지원 서비스의 품질 제고, 지원사업의 책임성 강화 - 보조금 부정사용 및 기업정보 유출 등 부적절한 행위 예방 가능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기존 통상활용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지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26.4.9,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초안마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o 통상활용지원사업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지원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 확보가 필수적
- o 조직·인력·시설 기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지정취소 기준 또한 지정기관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수단에 해당
- o 이해관계자 의견 및 사업의 공공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대안1이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 ☐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최소한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명확화 하여 전문성·책임성 확보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보조금 관리 강화, 기업 정보 보호 등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본 규제는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에 해당
 - 인력기준도 관세사·변호사·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과도한 진입규제로 보기 어려움
- ☐ 현재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을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나 진입제한을 발생시키는 성격이 아님
- ☐ 통상 전문 지원사업의 품질 확보 및 정부 재정의 적정 집행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함.
- ☐ 지정취소 역시 지정요건 미충족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본 규제는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사항임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제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 지원기관 지정제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제도

※ 이들 제도 역시 일정한 조직·인력·시설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행위 발생 시 지정취소 규정을 두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지정요건은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지원기관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준임
- 지정대상 기관 대부분은 이미 관련 사업 수행 경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요건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지정취소 사유 또한 장기간 사업 미수행, 보조금 부정사용, 기업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준수 부담은 크지 않음
- 따라서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성과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산업통상부는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통해 조직·인력·시설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지정 이후에도 사업실적 보고, 보조금 정산자료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정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통상지원사업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운영 가능하므로 별도의 대규모 예산 소요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1년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설립이후 15여 년간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16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왔음
-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책임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하였고,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등을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의6 제1항, 제2항	해당 없음	—

4. 종합결론

- ☐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조직·인력·시설 기준과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전문성·책임성 확보 및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 ☐ 통상지원 서비스의 품질 확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기업정보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 확보 측면에서 현행보다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제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함

〈규제대안1 :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제도화〉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해당 없음

☐ 정성분석

(정성)영향집단명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18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16개) 및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법인)
활동제목	통상활용지원사업
비용항목	정성적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의무 부담이 제한적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인력·시설 요건만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침해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기존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18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16개)에서 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금번 입법목적이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나 진입제한을 발생하기 보다 지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품질 향상,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 및 기업정보 보호 강화 등의 공익적 효과를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